

신안산대학교 산학협력단

(2023학년도 제1차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 회의록)

1. 일시: 2023. 04. 24.(월), 11:30~12:00

2. 장소: 본관 2층 세미나 II 실

3. 위원 출·결 사항

○ 위원정수(6명): 위원장(1명), 위원(5명)

○ 참석 위원: 4명

- 위원장(1명): 김민

- 위 원(3명): 김세환, 오혁수, 강선규

○ 결석 위원: 2명

- 위 원(2명): 박형근, 김해진

4. 회의안건

[제1호 안건] 신안산대학교 산학협력단 정관 및 산학협력단 규정 개정 심의

[제2호 안건] 2022회계연도 결산(안) 심의

5. 개회선언

위원장 김민: 성원되었음을 확인하고 개회를 선언함.

6. 회의내용

**[제1호 안건] 신안산대학교 산학협력단 정관 및 산학협력단 규정
개정 심의**

위원장 김민: 본 안건에 관한 심의 내용 상정하며, 설명함.

○ 신안산대학교 산학협력단 정관

현 행	개정안
제1장 총칙 제4조(목적 및 업무)	제1장 총칙 제4조(목적 및 업무) 23. 산학협력단 직원 채용 <추가>
제3장 운영위원회 제13조(운영위원회) ③ 위원회 위원장은 단장이 되고, 당연직 위원은 대학의 교무혁신처장, 기획처장, 학생 취업처장, 사무처장, 입학홍보처장으로 하고, 임명직 위원은 대학 교직원 및 외부인사 중에서 대학 총장이 임명한다.	제3장 운영위원회 제13조(운영위원회) ③ 위원회 위원장은 단장이 되고, 당연직 위원은 대학의 교학처장, 기획처장, 사무처장으로 하고, 임명직 위원은 대학 교직원 및 외부인사 중에서 단장이 임명한다.
제5장 보칙 제28조(운영세칙 등) 단장은 산학협력단 사업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총장의 승인을 얻어 운영세칙 등을 정할 수 있다.	제5장 보칙 제28조(운영세칙 등) 단장은 산학협력단 사업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운영세칙 등을 정할 수 있다.

○ 산학협력단 운영 규정

현 행	개정안
제3장 운영위원회 제6조(운영위원회) ② 운영위원회는 당연직 위원인 산학협력단장을 포함하여 산학협력단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는 10인 이내의 교직원 및 산업체인사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산학협력단장이 된다.	제3장 운영위원회 제6조(운영위원회) ② 위원회 위원장은 단장이 되고, 10인 이내의 교직원 및 산업체인사로 구성하며 단장이 임명한다.
제5장 부설기관 제20조(센터·사업단장) ① 부설기관에는 센터·사업단장을 두며, 산학협력단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.	제5장 부설기관 제20조(센터·사업단장) ① 부설기관에는 센터·사업단장을 두며, 단장이 임명한다.
제6장 보칙 제29조 (규정의 개정) 이 규정의 개정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의 규정 개정 절차에 의한다. 제30조 (시행세칙)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.	제6장 보칙 제29조 (규정의 개정) 이 규정의 개정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정 절차에 의한다. 제30조 (시행세칙)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.

○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 규정

현행	개정안
<p>제2조(구성) ① 위원회 위원은 단장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하며, 단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.</p> <p>② 위원회 위원장은 단장이 되고, 당연직 위원은 대학의 교무혁신처장, 기획처장, 학생 취업처장, 사무처장, 입학홍보처장으로 하고, 임명직 위원은 대학 교직원 및 외부인사 중에서 대학 총장이 임명한다.</p> <p>제5조(보고)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회의록에 작성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</p>	<p>제2조(구성) ① 위원회 위원장은 단장이 되고, 10인 이내로 구성하며, 당연직 위원은 대학의 교학처장, 기획처장, 사무처장으로 하고, 임명직 위원은 대학 교직원 및 외부인사 중에서 단장이 임명한다.</p> <p>제5조(보고) 간사는 출석위원의 서명 또는 날인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단장에게 보고 한다.</p>

○ 산학협력단 직원인사위원회 규정

현행	개정안
<p>제2조(구성) ② 위원은 교직원 중에서 단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하며,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.</p>	<p>제2조(구성) ② 위원은 교직원 중에서 단장이 임명하며,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.</p> <p>④ 위원회에는 간사를 두며, 간사는 단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. <추가></p>

위원장 김민: 본 안건에 대하여 논의하여 줄 것을 요청함.

<질의와 논의 후>

위원 강선규: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제안함.

위원 오혁수: 강선규 위원 제안에 동의함.

위원 김세환: 재청함.

위원장 김민: 이의가 있는지 묻고, 참석의원 전원찬성으로 신안산대학교 산학협력단 정관 및 산학협력단 규정 개정 심의에 관한 심의 건은 원(안)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함.

[제2호 안건] 2022회계연도 결산(안) 심의

위원장 김민: 2022회계연도 산학협력단회계 결산(안) 심의를 상정하며 2023. 03. 28.(화)부터 2023. 03. 29.(수)까지 정윤회계법인을 통해 외부감사를 실시한 결과 지적사항이 없었음을 설명하고, 산학협력단 하경진 팀원에게 세부 설명을 지시함.

팀원 하경진: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2022회계연도 산학협력단 결산(안)에 대해 설명함.

(단위:원)

현금흐름표		재무상태표		운영계산서	
현금유입	2,713,563,217	자산	751,501,767	운영수익	2,726,205,591
현금유출	2,914,786,718	부채	81,192,184	운영비용	3,541,672,849
현금증감	-201,223,501	기본금	670,309,583	당기운영차익	-815,467,258
기초현금	569,465,705	공백			
기말현금	368,242,204				

2023회계연도 운영수익은 2,726,205,591원 운영비용은 3,541,672,849원으로 당기 운영손익은 815,467,258원 손실이며, 개인자문, 연구 및 위탁사업 등 주요 내용과 당기운영손실에 유·무형자산 감가상각비 643,773,355원 및 학교회계전출금 200,000,000원이 포함되어 있음을 설명함.

위원 강선규: 기술자문료 및 위탁사업 관련 미수금 내역에 대해 질의함.

팀원 하경진: 대영MTC, (주)바이트소프트의 미수금에 대해서는 회수 가능성이 낮아 전액 대손충당금 설정하였으며 나머지 미수금은 전액 회수되었음을 설명함.

위원 오혁수: 대손충당금 설정한 미수금은 담당자가 회수 가능성을 확인하여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각처리 할 것을 제안함.

위원장 김민: 본 안건에 대하여 논의하여 줄 것을 요청함.

<질의와 논의 후>

위원 오혁수: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제안함.

위원 김세환: 오혁수 위원 제안에 동의함.

위원 강선규: 재청함.

위원장 김민: 이의가 있는지 묻고, 참석의원 전원찬성으로 2022회계연도 결산(안) 심의에 관한 심의 건은 원(안)대로 가결되었음을 알리고 폐회를 선언함.

위와 같이 의결함.

2023. 04. 24.

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 위원장: 김 민



위 원: 김 세 환



위 원: 오 혁 수



위 원: 박 형 근

서명

위 원: 김 해 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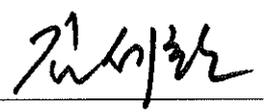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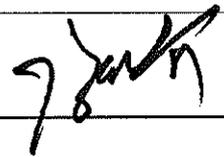
서명

위 원: 강 선 규



2023년도 제1차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 참석자 명단

- 일시: 2023. 04. 24.(월), 11:30
- 장소: 본관 2층 세미나2실
- 참석대상: 총 6명 / 위원장 1명, 위원 5명

연번	구분	소속	직위	이름	서명
1	위원장	산학협력단	단장	김민	
2	위원	교학처	교학처장	김세환	
3	위원	기획처	기획처장	오혁수	
4	위원	사무처	사무처장	박형근	
5	위원	안산상공회의소	사무처장	김해진	
6	위원	반월염색사업 협동조합	전무	강선규	

신안산대학교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